정보공개편람

www.open.go.kr

2021. 10.

대전광역시 중구

민 원 봉 사 과

CONTENT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3
Ⅱ. 법적 근거 ····· 3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4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6
Ⅴ. 정보공개의 원칙 ····· 7
Ⅵ. 정보공개위원회 ····· 13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정보공개 대상기관 ····· 17
Ⅱ. 공공기관의 의무 ····· 23
Ⅲ. 정보공개심의회 ····· 40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 청구 ····· 48
Ⅱ. 정보공개 처리 ····· 64
Ⅲ. 불복구제 방법 ····· 101

CONTENT

제4장 정보 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 109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비공개 해설 ····· 175

별표 / 서식 _ 204

CONTENT

일 반

001.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정보공개청구 ····· 10
00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 10
003.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 11
004. 재개발조합 등의 정보공개 의무 ····· 12
00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 12

대상기관

006. 사전 공개한 행정정보의 게시 기간 ····· 28
007. 사전 공개한 행정정보를 청구한 경우 ····· 28
008. 정보목록의 공개 구분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 30
009.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란 ····· 36
010.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 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 37
01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 37
012.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 42
013.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 43
014.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 ····· 43
015.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 ····· 43
016.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취지 ····· 44
017.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이 가능한지 ····· 44
018.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및 회의록 공개 ····· 44

처리절차

019.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 50
020.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 50
021.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정보공개청구 ····· 51
022. 민원상담 녹취파일 정보공개청구 ····· 51
023. 결재 시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52
024.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53
025.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 ····· 54
026.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 55
027.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 55
028. 정보공개 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 56
029.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 56
030.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58
031. 정보공개청구 기관 이송과 부존재 처리 ····· 60
032.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62
033. 민원인이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62
034.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정보공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63
035. 정보의 한시적 비공개 ····· 65
036.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 69
037.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할 때, 청구인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 69
038.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실시일 ····· 70
039.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시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73
040.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 방법 ····· 76
041.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 77
042. 문서 작성 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지 ····· 77

CONTENT

04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접수 및 민원답변 리스트 정보공개청구 … 77
044. 정보의 사용 목적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 78
045.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해당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 80
046. 출퇴근 시간 등 정보공개청구 … 80
047. 공직자 메일에서 메일 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 85
048.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 85
049. 오디오, 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계산 … 95
050. 신문사,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 96
051.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시 우편요금도 감면 대상인지 … 96
052. 수수료 정산 시기 … 97
053. 정보공개 일시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 97
054.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산정 … 98
055. 사본 첫장 수수료 계산 등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 … 98
056.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 … 101
057.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03
058. 다수의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 104
059. 이의신청 기간(30일)의 계산 … 104
060. 이의신청 내용은 동일하나 청구인 또는 청구건이 다른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104

정보공개 / 비공개

061.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정보의 공개 여부 ····· 115
062.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 126
063.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의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정보공개청구 ····· 126
064.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정보공개청구 ····· 127
065.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점수 정보공개청구 ····· 128
066. 국고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129
067.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 130
068.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 131
069.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정보공개청구 ····· 132
070.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 132
071.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 133
072.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 133
073.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 141
074.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청구 ····· 141
075.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 142
076.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 142
077.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 143
078.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 143
079. 토지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 143
08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 144
081. 기관장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45
082.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45
083.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 ····· 145
084.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 146
085.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 146
086.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 147
087. 건축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 147
08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정보공개청구 ····· 148

CONTENT

089.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149
090.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50
091.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 150
092.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 160
093.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 161
094. 건축물 등의 도면 정보공개청구 ····· 161
095.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정보공개청구 ····· 162
096.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 대비표 정보공개청구 ····· 162
097.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163
098.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 163
099.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 내역의 범위 ····· 164
100. 관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업소명, 소재지) 정보공개청구 ····· 165
101. 단체협약 정보 공개 가능 여부 ····· 165
102.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 166

제 1 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Ⅱ. 법적 근거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Ⅴ. 정보공개의 원칙
Ⅵ. 정보공개위원회

Ⅰ 정보공개[1]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목록 공개, 원문공개)
-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2]

Ⅱ 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법률상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2)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 되어 있었다.(대법원 97누5114)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3)]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 **조 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1992. 1. 4.	○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
1994. 7. 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1996.12.31. 제정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03. 6.24.	○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
2004. 1.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자적 정보공개 근거 마련,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 도입,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기준 도입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2004. 7.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정보공개법 적용기관 구체화(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등) - 정보공개방법 확대(전자우편, 저장매체 저장 제공 등)

3)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관련 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두5049)

4)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2두17384)

구 분	주 요 내 용
2006. 4.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 - 중앙, 지자체, 교육청 등에 대한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가능
2006.10.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2008. 2.29.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책임행정 강화) - 대통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2011.10.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정보 사전공개 활성화 -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운영 등
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14.3.1.시행)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상향 및 설치 의무기관 명확화 - 신분보장,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 권고 등
2014.12.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2017.12.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파일 수수료 무료화
2019.12.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주요 공공기관장의 일정 통합공개 근거 규정 마련
2020.12.2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화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대상에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추가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관리 강화 등
2021. 6.2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률 개정('20.12.22.)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규정 - 입찰계약 정보 구체화 및 확대,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 제도 개선사항 규정

IV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5])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6] 필요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및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정에 대한 신뢰 제고**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 배분 필요성 증대**
  -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 및 국민의 신뢰 제고**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

5)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6)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88헌마22)

V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7]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3항)

  ※ 공공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제외)은 3년마다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9조 제4항)

---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두8827)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법 제4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대상·범위·절차 및 비공개대상 정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적용[8)]

  ☞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 충돌·모순 해소

  ※ 다른 법률 :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건축법(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법(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민사집행법(채무불이행자 명부), 민사소송법(소송기록 등), 형사소송법(형사 재판기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공부), 의료법(의료기록) 등

정보공개법 적용 유의사항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의 공개·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만 결정
-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처리 방법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정보의 열람 및 발급 신청방법 등)를 안내

  ※ 안내방법 : 정보공개 청구의 통지서(별지 제4호의2)를 활용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안내

※ 제4조 제1항 vs 제9조 제1항 제1호 비교

구 분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정보 비공개 결정의 사유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국가정보원법 제8조

8)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대법원 2007두2555)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 민사소송법 제16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건축법 제38조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의료법 제21조 - 국회법 제128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통계법 제3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행정심판법 제41조 - 노동위원회법 제1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효 력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 공개 대상·범위·절차 및 비공개대상 정보 등이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Q 001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정보공개청구

A.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도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열람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 00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A.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두2555)

A.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014.1.1.일 이후부터 적용, 법령 해석례 14-029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003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보공개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A. 따라서, 2014.1.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의 공개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2013.12.31.이전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로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공정증서 등)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 받았다면 이는 청구자, 즉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의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

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에 정하는 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조의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 결정의 채권자입니다.

Q 004 재개발조합 등의 정보공개 의무

A.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열람·복사 등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각종 서류 등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공개가 이뤄질 사항일 것입니다.

A. 다만, 해당 정보를 지자체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지자체에 공개 청구도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준 내에서 조합원 등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00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법령 해석례 12-0195)

A.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만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A. <답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VI 정보공개위원회

- **위원회 기능(법 제22조)**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위원회 구성 등(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 11명(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외부위원 위촉)
  - 위원 자격
    - 위 원 장 :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 하거나 임명
    -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하거나 임명
    - 위 원 :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제2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위원의 의무(법 제23조)**
  -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법 제22조, 시행령 제19조)**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위원회의 권한(법 제24조)

-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평가 요청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 회의 운영(시행령 제21조)

-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 소집 가능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한 전년도의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포함
-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은 1.31.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제출, 시군구는 2.10.까지 시도에 제출

제 2 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정보공개 대상기관
Ⅱ. 공공기관의 의무
Ⅲ. 정보공개심의회

I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9]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50개, '21.1.29. 기준)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9)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법령 해석례 06-0038)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 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8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1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18)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 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엠씨에스(주),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 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10)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공공기관 지정현황 소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 –알리오 안내– 공공기관 현황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412개, '21.4.30. 기준)**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소재) 클린아이(www.cleaneye.go.kr) – 클린아이 소개– 지방공공기관 현황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행령 제2조)**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유아교육법 :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유치원 등
    -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 고등교육법 : 대학(사립대학 포함[10)]),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798개, '21.4.30. 기준)

※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재) 클린아이(www.cleaneye.go.kr) – 클린아이 소개 – 지방공공기관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방송문화진흥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금융감독원, 건설 근로자공제회, 낙농진흥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지방문화원, 한국방송공사, 언론중재위원회,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법제처 09-0161), 한국증권업협회(대법원 2008두 5643), 지역조합(상주축산업협동조합)(대구고법 2008누212),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센터(법제처 11-0261), 대한기술사회(법제처 07-0188), 주택관리공단(주)(법제처 07- 0319), 건설공제 조합(법제처 07-0323), KT(법제처 08-0442), 지자체 문화 재단(법제처 08-0411), 학교법인(대전고법 2007누519), 대한변호사회, 재개발조합 등

10)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됨.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됨(대법원 2004두2783)

판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8두5643, 법령 해석례 06-0318, 07-0188)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 해당 연도의 의미는 '00년', '△△'년 등 특정 연도나 현재부터 과거 ○년치 등을 말함

Ⅱ 공공기관의 의무

1. 정보공개의 원칙(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2. 공공기관의 의무(법 제6조, 제6조의2)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 노력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
- 공공기관은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이용
-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 실시
-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 결정, 고의적 처리지연, 위법한 공개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 금지

3.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 (법령정보) 법령(조례, 지침 포함),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 (기　　타) 국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 (보건·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등 국민의 건강 관련 정보 등
  -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 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의료·사회보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 (조세) 국·지방세제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건축허가·착공 통계 등
- (가스, 상하수도) 단수 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 현황 등
- (전기·통신) 정전 공고, 전기 공급 및 이용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 (교육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②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등
  - (국가계약법)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발주계획, 입찰공고 내용, 개찰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변경 내용,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124조 제1항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 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심사기준 등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낙찰자 심사 결과,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 정보

※ 낙찰자 심사기준과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는 '21. 12. 23.부터 공개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 (국가재정법)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 - (지방재정법)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구분	공개범위/내용 (예시)	비고
중앙	• (범위) 장·차관, 소속기관장, 실·국장 등 • (내용) 직위, 사용일자 또는 일시,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방법, 참석대상 및 인원 등 • (주기) 매월 또는 분기	
지자체	• (범위) 단체장(소속기관장 포함), 의원, 과장급이상 등 • (내용) 직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방법, 참석대상 및 인원 등 • (주기) 매월 또는 분기	
공공기관	• (범위) 기관장, 임원, 부서장 • (내용) 직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방법, 참석대상 및 인원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공개 가능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기관장의 일정공개에 관한 정보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관	• 법 제2조 제3호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4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공개 시점 및 범위	• 정보공개포털에서 당일 일정을 통합 공개하고, 각 기관 누리집에서는 과거 일정을 최소 1개월 이상 공개(일간-주간-월간 단위로 표출) • 미래 일정 중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은 미리 등록(최소 1주일 이상)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현행화** • 기관 누리집 일정 등록 시점은 전일 19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당일 0시까지는 정보공개포털에 표출되도록 미리 등록
공개 내용 및 방식	• 일정의 공식 명칭, 시작 시각, 장소 정보를 공개 **※ 예시: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개막식 / 11.22(금) 10시 /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업무 관련 주요 일정은 공개가 원칙,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일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 • 기관 홈페이지(누리집)에 기관장 일정 공개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주요인사의 일정을 통합하여 공개**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단속 건수 등 행정 활동의 실적
-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 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Q 006 사전 공개한 행정정보의 게시 기간

A.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A. 사전에 공개된 행정정보의 게시 기간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07 사전 공개한 행정정보를 청구한 경우

A.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따라서,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소재(인터넷 주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중앙행심 2013-07091)

※ (관련판례)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소송 등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없음(대법원 2008두13101)

4.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 '05. 7. 30. 이후 '주요 문서목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으로 범위 확대(시행일 '05.7.30.)
    ※ '05. 7. 30. 이후 생산된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이전 생산문서는 기존의 '주요 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타 기관 접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문서시스템 등을 통해 문서 제목으로 공개(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문서 제목으로 목록 작성·비치를 갈음
  -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11)]
    ※ 정보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 (잘못된 비공개 목록 예시) 관내 음식점 특별점검 결과보고, 을지연습 시행계획, 보안점검 일제 정비계획 등 목록(제목) 자체가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비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록을 비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임

목록공개 예시

문서제목	기관명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생산일자	문서번호	보존기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개정	행정 안전부	정보공개 정책과	홍길동	2021. 8.00.	정보공개 정책과 -20000	10년

단위업무	공개여부	분류체계	본문파일
정보공개 제도운영	공개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정보공개>정보공개운영	필요시 청구신청 (안내문구)

11)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의 비위 사실 통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대한 불시 단속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Q 008 정보목록의 공개 구분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A.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A. 다만,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 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결정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방안 추진**
  - 공개 가능한 문서는 비공개 지정을 지양하고 적극 공개

    ※ (예시) ① 외부기관 또는 대국민 시행을 위한 문서, ②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연차보고서 등),
    ③ 법령 제·개정 계획 문서, ④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가능 문서

  - 비공개 사유의 엄격 적용

    ※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5호)'에 따른 비공개 기간 초기값 단축(자율지정 → 90일, '19.9. 적용)

  - 정보공개 종합평가 시 평가항목에 원문공개 분야 포함
  -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 작업*을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 문서로 전환

    *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문서 이관 전 공개 여부 재분류

  - 기관별 원문공개율 통계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 공개
  -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문공개 권고

6.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법 제9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정보공개시스템 등)

작성 단위

- 직제에 명시된 실(국)·과·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직제상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과 단위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가능
  예) 우체국, 각급 학교 등

작성 방법

① 실(국)·과·팀별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
- 작성 단위별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② 기관 단위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세부기준 작성
- 기관 담당자는 작성 단위별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세부기준 작성
  ※ 필요한 경우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운영

③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작성 단위별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변경할 경우 작성한 실(국)·과·팀과 조정

④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증·확정

●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 판례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분류
- 직제개정 등으로 소관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하여 공개
-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은 비공개 세부기준의 점검·개선 결과를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실(국)	○○과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제5호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팀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사항 발굴 및 심사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비공개 대상 정보 조사 서식 작성요령
① 작성단위 : 실(국)·과·팀
② 소관사항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과·팀의 소관사항(단위업무)을 기재
③ 비공개 대상정보 :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④ 근　　거 : 법 제9조 제1항 각호 기재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구 분	비공개 대상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금지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2. 노동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그 회의의 회의록 및 관련 정보(노동위원회법 제19조)
○타 사용목적 금지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법률에 의한 명령상 비밀유지 또는 비공개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2.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작성요령
  - 각 실·과·팀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근거법령 기재

※ 담당자의 직무상 주의사항 및 비밀엄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제1호)가 아님

(예)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성폭력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요령
  - 각 작성 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구체적인 사항 기재

예시) ①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국가안전보장)
②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록(국방)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 작성요령
  - 각 작성 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재

  예시)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다중이 이용하는 청사·지하철 역사 등 시설에 대한 도면 등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작성요령
  - 각 작성 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재
  - 비공개 대상 정보량이 많을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공개 유형별로 분류하여 작성

  예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①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이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8호」에 대해서는 위 작성요령을 참고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잘못된 작성사례)

1. 실(국)·과 등 작성단위 미기재, 해당기관의 단위업무가 아닌 일반적 사항을 기재하는 등 대부분 기관에서 발생되는 오류

작성단위 (*작성단위가 아닌 비공개 사유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 해당기관의 단위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비공개 사유를 작성)
(제6호)개인정보	- 진정·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잘못된 작성사례)

작성단위 (*작성단위가 아닌 비공개 사유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 해당기관의 단위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비공개 사유를 작성)
(제7호)법인·단체 경영·영업상 비밀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비공개 조항 적용이 잘못된 경우

– (제1호로 잘못 적용) 담당자의 직무상 주의사항, 비밀엄수 의무 등의 포괄적 규정을 정보공개법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제1호)로 잘못 적용한 사례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및 제198조(준수사항),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성폭력 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부동산공시법 제37조(성실의무 등), 감정 평가법 제26조(비밀엄수),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병역공개법 제13조(비밀엄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보안유지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 유지), 통신비밀 보호법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호

– (제5호로 잘못 적용)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또는 국가안전보장(제2호) 등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감사·감독, 의사결정과정 등 비공개 사유인 제5호로 잘못 적용한 사례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00청) – 비밀관리/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관련 사항,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관련 사항(00청)	제5호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잘못된 작성사례)

– (제6호로 잘못 적용) 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비공개 사유인 제6호로 잘못 적용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내역(통계), 출장비 지급현황(00위)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00부)	제6호

– (제7호로 잘못 적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제3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 사유인 제7호로 잘못 적용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공공청사 도면 정보(00청)	제7호

3. 법령의 근거 없이 비공개 하거나 비공개 근거 조항 미기재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회의록(00시) – 각종 위원회 회의록(00도) – 여성발전기금 선정 회의록(00도) – 각종 위원회 회의록/심의결과(00구, 00군) 등	근거없음

Q 009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란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한 비공개 사유 등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A. 공공기관은 변화가 빠른 정보의 특성과 정보공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세부 기준을 주기적(3년마다)으로 점검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010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법령 해석례 10-0082)

A. 공공기관은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세부 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A.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 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A.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Q 01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A.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기준을 근거로 청구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정보공개 청구 내용의 확인 및 안내

- **불필요한 청구의 방지 및 이의신청의 사전예방 노력**
  - 정보공개 접수 담당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사전공개 및 정보목록을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대법원 2007두25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 **정보 존재의 증명책임**
  -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 청구자에게 있음(대법원 2010두14800)
  -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8.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 공개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과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결정

9.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시행령 제11조의2)

-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
  -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및 교육청은 실·국장급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운영
  - 공공기관 주관 하에 정보공개 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역할 및 기능

-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및 정보의 사전공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지원
    - *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위해 출석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 **소속기관 또는 시군구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 소속 또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지도·교육 등을 주관하여 실시
    - * 소속 또는 시군구의 정보공개 문의는 1차적으로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처리
-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 기관별 규모·특성 등을 고려,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10. 정보공개 교육 실시(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3조의2)

-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불복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 교육 방법 및 운영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스스로 결정 및 교육 실시 증빙자료 마련(계획 및 결과보고, 참석자명부 등)

Ⅲ 정보공개심의회

1. 개 요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명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공소·교정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1/3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일반 공공기관 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상향은 '21. 12. 23.부터 적용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외부 전문가 위촉 시 배제 대상(예시)

• 해당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2. 대상기관

●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

※ 국가기관등은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 통합 설치·운영 가능
※ 준정부기관, 지방 공사·공단은 '21. 12. 23.부터 심의회 의무설치 적용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

3. 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미개최 및 심의 제외사유(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타 법령을 의미함.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특히, 본 안내서 제4장 Ⅰ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포괄적 규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는 심의 대상에 해당)

-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12]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공공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의 제외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12) 같은 내용이란 청구취지와 청구내용이 명백하게 동일한 내용의 신청으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01추95)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심의회 미개최 시,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18조 제2항)

■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법 제12조의2)

-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 등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자문·연구 등을 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됨
-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별지 제6호의2)
-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함

Q012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출석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013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A.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추95)

A.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Q 014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

A.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 2001추95) 심의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1~3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 015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

A.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회 미설치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016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취지

A.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2를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A. 이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017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이 가능한지

A.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때, 배제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예시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원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018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및 회의록 공개

A.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또한,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도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와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등의 보호이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별 발언내용 등이 알려지면 공정한 심의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성명을 가리고 부분공개 가능

제 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 청구

Ⅱ. 정보공개 처리

Ⅲ. 불복구제 방법

□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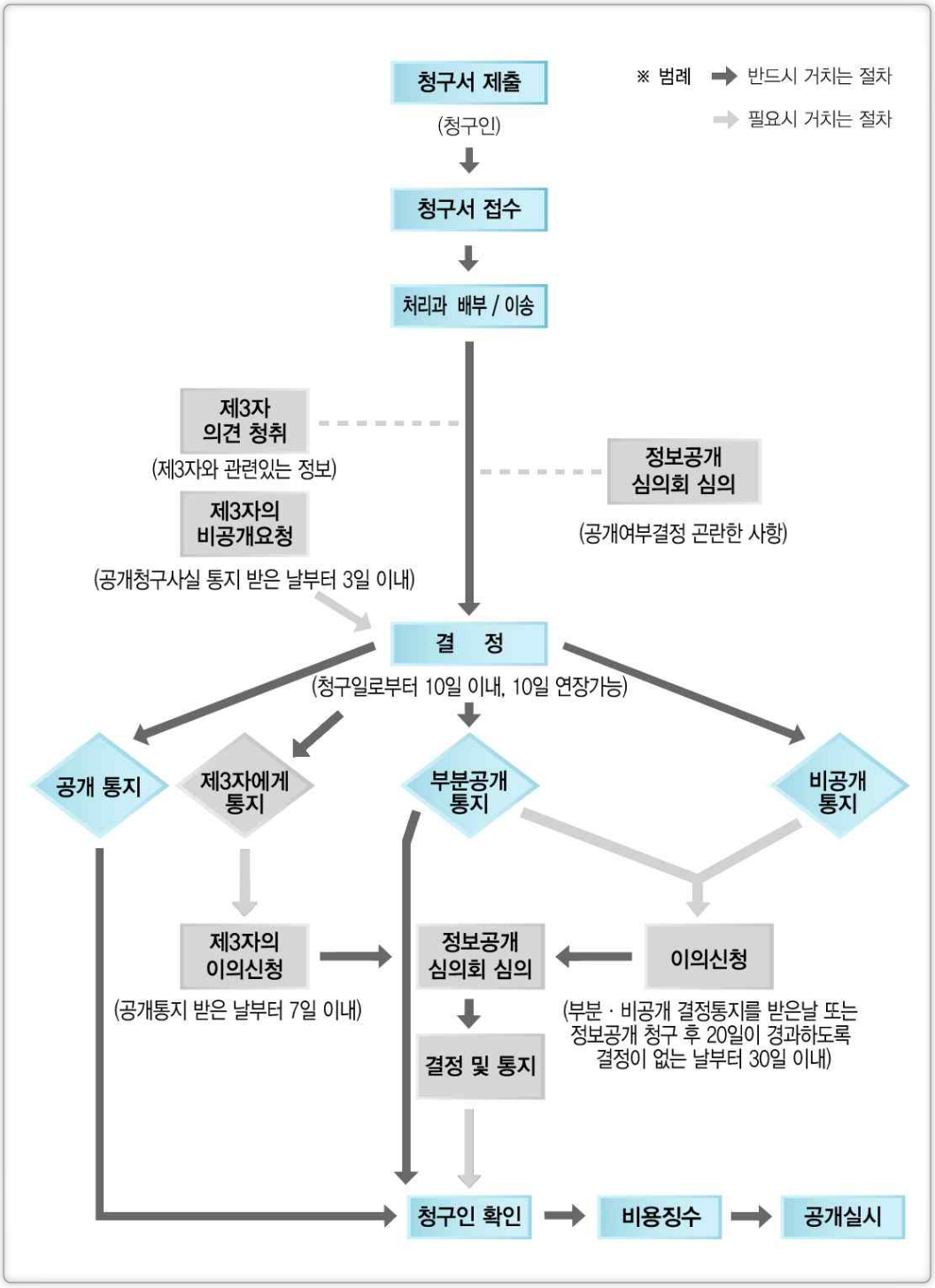

I 정보공개 청구

1.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13]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됨(대법원 2010두18918)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6두3049)
- 해당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 통계작성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14],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15]
-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법령 해석례 12-0188)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음(법령 해석례 16-0629)

---

13)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이며, '관리'란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를 말함(서울행법 2007구합31478)

14)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법령 해석례 08-0224)

15) 프로그램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서울행법 2007구합7826)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대법원 2009두6001[16])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서울행법 2007구합31478[17])

  ※ 공개 청구된 정보가 타 기관에서 생산됐으나, 직무상 접수 등을 통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경우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후 결정)
- 타 기관 생산문서를 보유·관리하던 중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 보관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다시 제출받아 공개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서울행법 2006구합16878[18])
- 검찰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CD, CCTV 영상정보, 민원인과의 통화 녹취록, 방송용 테이프 등

16)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6001)

17)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서울행법 2007구합31478)

18) 법 제13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이면서 교부자인 증권회사에게 요청하여 다시 문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음. 다시 문서를 제출받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다시 제출받아 공개한다 해서 위법은 아님 (서울행법 2006구합16878)

Q 019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A.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 및 이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종 문서를 의미합니다.

※ 이메일을 통해 민원처리 경위 자료를 송부해 준 경우, 해당 자료도 정보에 해당(대구지법 2010구합3833)

Q 020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영상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A.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9두6001)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두12707)

A.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두6001)

A.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5729)

Q 021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정보공개청구

A. 시청 콜센터 등에서 보유·관리하는 녹음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 및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에 직무상 응대한 직원의 음성 외에 제3자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22 민원상담 녹취파일 정보공개청구

A. 녹취파일에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음성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A.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한 경우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도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녹취 내용 중에 비업무적인 내용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통화한 녹취파일은 해당 통화 내용 등에 따라 사생활의 침해 우려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또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023 결재 시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각종 시스템 내에 저장된 결재 시간 등도 정보에 해당하며, 특정 문서의 결재 시간은 공개 가능할 것입니다.

A. 그러나, 시스템을 통해 결재 시간 등을 추출하는 것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의 가공에 해당하여 부존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대법원 2000두7087[19])
  -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판단근거, 이유, 회의 등)

2. 정보공개의 방법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대법원 2002두2918[20])**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19)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0두7087)

20)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두2918)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등)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음
-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 제3항, '21.12.23. 시행)

Q 024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A.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따라서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결정 통지시에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모든 국민**[21]
  - 미성년자, 재외국민[22],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23]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5-0445)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 등), 국회의원 요구자료(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등), 지방의원 요구자료(지방자치법 제40조 등),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님(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제출여부 결정)

Q 025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범위(법령 해석례 12-0203)

A.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 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1)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대법원 2003두8050) 정보공개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 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갖음(서울행법 2008구합1009)

2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울행법 2005구합10484)

Q 026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법령 해석례 07-0376)

A.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A.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027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A.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A.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A.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 지방의회의원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15무423)

Q 028 정보공개 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A. 국민 누구나 공개 청구가 가능하므로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때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에게 정보의 공개가 가능함

A. 다만, 특정인에게만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청구시점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 위임받아 정보를 교부받는 경우나 공개 시 위임 받는 경우, 그 위임의 시점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대리인에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청구인이 확인된다면 청구할 때에도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 029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A.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 결정된 정보의 수령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A.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24] 소지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법 제10조 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의2 서식]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 말로 청구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기타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 청구 방법을 의미함

24)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Q 030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A.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할 수 있습니다.

A.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알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 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해당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A.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시행령 제6조 제2항)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법 제11조 제4항)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시행령 제6조 제2항)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소관부서 분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로 분류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큰 부서, 청구 처리건이 많은 부서, 청구서상에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등이 주관부서가 되어 신속하게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소관 기관 이송[25](법 제11조 제4항)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생산·접수 등)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이관한 경우에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

-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통지 가능)

※ 별지 제3호의2 서식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 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25)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미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잘된 사례>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업무를 시행한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정보는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검사기관인 ○○기관에 이송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례>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시 ○구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구청에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 주관자료이므로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정보는 ○○시 소관 업무입니다. ○○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 기관을 안내[26)]

Q 031 정보공개청구 기관 이송과 부존재 처리

A.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6두20587)하고 있습니다.

26)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법령 해석례 10-0251)

A.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본인이 청구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 기관으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한 후, 정보부존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처리[27](법 제11조 제5항)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진정(陳情)·질의 등으로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28]

※ 판단 근거, 이유,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요청 등은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민원으로 판단하여 처리

27)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됨. 만약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지만,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민원사무처리법만 적용(법령 해석례 10-0055)

28)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Q 032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A.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공개 결정이 아닌 민원회신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전달하더라도, 그것은 정보공개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것인바,

A. 이 경우에도 역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민원으로 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033 민원인이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법령 해석례 05-0067)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일반 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A.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가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6. 정보공개청구 보완·취하

- **청구 서류의 보완·취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 산입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기간에 미 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청구 서류의 취하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안내
  - 직접 제출 및 우편·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 구두 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시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Q 034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정보공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A.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 신청내용과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A. 위 민원신청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 생년월일 등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민원서류 보완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Ⅱ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원칙)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예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29]방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29)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20587)

Q 035 정보의 한시적 비공개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해당 정보 생산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A.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30],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공개 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31]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30)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부분공개란 공공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1두6425)

31)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정보공개법 제29조 제2항)

-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32]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통지 가능)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시행령 제7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할 때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할 때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할 때 :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32)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과 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 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령 해석례 11-0134)

□ 정보공개 관련 각종 기간의 계산 방법

▸ 정보공개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계산 :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구 분	방 법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1조)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기간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이의신청 결정 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정보공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산(민법 적용) : 첫날 미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구 분	방 법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법 제18조 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기간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법 제21조 제1항)
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법 제21조 제2항)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실시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제21조 제3항)

▸ 민원처리법 제19조 준용 :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 민원처리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 공휴일, 토요일 산입

구 분	방 법
공개 실시일 지정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통지, 최초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정보량이 방대한 경우의 정보 제공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제공(시행령 제12조 제3항) *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내부 종결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가능(시행령 제12조 제4항)

2. 제3자(이해관계인)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3자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 제3자의 비공개 요청(법 제21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대상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한 등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다만,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공개 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필요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

- 필요한 경우[33]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별지 제11호의2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8680)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34]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3)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함

34) 정보공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름(초일 불산입, 토요일·공휴일 산입)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35]을 두어야 함

Q 036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A. '제3자'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제3자 통지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로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합니다.

※ 통지서의 송달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름

Q 037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할 때, 청구인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A.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건물번호 등 상세주소 제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A.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35)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결정일부터 공개 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법령 해석례 06-0058)

A.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A. 청구인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 서식인 문서로 해야 합니다.

A. 청구인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공익신고, 민원, 고발 등을 한 경우와 같이 청구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청구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Q 038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실시일

A.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과 관련된 절차 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A.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A.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결정일부터 공개 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법령 해석례 06-0058)

A. 다만,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알권리가 일정기간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청구인에게 충분히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의견청취 가능

- **정보 공개의 여부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해당 공공기관이 결정해야 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법 제13조, 제14조,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결정통지
- • 공개(부분공개) 결정 :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는 이유, 불복 방법·절차
-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

●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청구인 및 제3자에게 통지[36]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통지' 버튼을 눌러야만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가 통지됨을 유의
  -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부분(비)공개 결정

-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 및 개별 법령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37]

  ※ 단순히 각 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

36)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통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이 결정통지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우편, 직접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공공정보정책과-3149, 2015.8.27.)

37)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두8827)

Q 039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시행문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법령 해석례 13-0423)

A.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고, 통지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이미 담당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인한 송부는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수령 방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으로 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A.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기관의 직인·처리 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5.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청구인 동의 시 일부 가공 공개 가능)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임의대리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공개결정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의 간격)

공개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4항)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38]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없음(대법원 2003두8050[39])
  - 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 없음(중앙행심 2016-13423)
-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가능. 단,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

    ※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38)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9)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2003두8050)

-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5두15694)
-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 결정 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 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 진행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3조 제4항)
-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
-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URL) 및 게시 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로 볼 수 없음[40]

– 열람의 제공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이 열람되지 않도록 유의
- 1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1회 열람이 원칙이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 열람 가능, 이 경우에는 총 열람 시간을 계산하여 수수료 산정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41]·복제물[42]의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작[43]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

40)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두6583)

41) 인화물 : 사진필름

42) 복제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사진필름 등

4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 열람은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제공과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의 전자적 공개(법 제15조)

-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 등)이나 매체[44]에 저장·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공개

Q 040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 방법

A. 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①"~일체" 식의 과다 청구인 경우, 청구인에게 법 제8조의 '정보목록' 검색을 안내하여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청구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②법 제13조 제3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우선 정보를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안내하고, ③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사본의 복사는 수수료 납부 후에 실시(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개에 응하지 않는 사례 주의) 등

44) 매체 비용은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산정

Q 041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A. 공공기관은 청구대상이 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침해되는 법익이나 기본권,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8두3426)

Q 042 문서 작성 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지

A. 공문서를 작성할 때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비공개 이익의 소멸 등으로 이전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현재는 공개대상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결정 시점에서 해당 문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Q 04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접수 및 민원답변 리스트 정보공개청구(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1)

A.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을 하였다.

A.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A.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전자파일 형태로 추출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044 정보의 사용 목적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법 2016누41844)

A. 정보공개 시 그러한 제한을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정보를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여부

-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인' 이나 '원본대조필'을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45]
  - 다만,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구대로 조치 가능
-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개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46], 지방공무원법 제69조[47] 및 형법 제225조[48] 및 제227조[49]

45)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시 없이도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므로 정보공개 실시 시 원본대조필을 해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음(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7)

46)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징계 사유)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7)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징계사유)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8)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9)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 상(법 제16조)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오프라인 신청건)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 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 방법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50]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법 제14조)
  -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50)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의 일부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면 마땅히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법리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정보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으므로,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 **부분공개 통지**

–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관련 판례**

– 민사소송 판결문 공개청구 관련, 이름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청주지법 2013구합1923)

Q 045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해당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 해석례 09-0027)

A.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A.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Q 046 출퇴근 시간 등 정보공개청구

A. 특정인의 출퇴근 시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6. 정보부존재 처리(법 제11조 제5항 제1호)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 기관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받은 정보의 검색가능 여부
  ※ '11년도 ○○ 재단법인 감사결과 청구 시, "○○ 재단법인", "감사" 등을 정보목록에서 검색
  ※ 온나라 시스템의 정보목록 또는 종이문서 목록 모두 검색대상
-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 시기 도래 여부
  ※ 매 ○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간행물의 생산 前 청구
-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 소요 여부
  ※ ○○경찰서가 ○○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 공개를 위해서는 지문감정 의뢰, 지문수사 자료표 대조 등 추가 절차 필요(정보부존재)

☞ 기관의 '생산·접수' 여부 판단 시 '상당한 개연성' 여부로 판단

-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부를 판단
  ※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 사항 등을 제시
  ※ '상당한 개연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이 판례 등을 참고하여 청구받은 정보와 기관의
  직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 '상당한 개연성' 인정 사례

- (행심 2004) 법무부가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 ○○노동청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 처리기간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 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 (행심 2009)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자가 입증해야하며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한다고 볼 수 없음

※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사례

- (서울행법 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 (행심 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 해당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타 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법에 따른 △△청 소관 사무를 타 부처에 청구한 경우

  ※ 지자체 업무인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중앙행정기관에 청구한 경우

- 해당 기관이 청구받은 정보를 생산·접수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경찰서에서 ○○지검으로 모두 이관한 사건 내용을 경찰서에 청구한 경우

  ※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

-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해당 기관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법령 해석례 10-0251)

  ※ 청구인이 00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기관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전제로 한 것(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549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서울행법 2006구합20716)

< '취합' 여부의 판단기준 >

- (기관 外)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인 취합에 해당되지 않음(정보공개 여부 판단)
- (기관 內)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여부 판단)
  - 청구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부서별로 정보가 나뉘어있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의 개념이 아님
  -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 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서별 관리방식 그대로 취합·제공
    ※ ○○부의 부서별 홍보비 예산 및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 '가공' 여부의 판단기준 >

구분	형태 변환	추출	조합
非전자	전자적 형태로 변환 - 스캐너 이용(공개) - 엑셀 등 변환(부존재)	(기존)인허가 서류별 관리 → 층수별, 회사별 통계	(기존)日별 관리 정보 → 年별 관리 정보
		(旣 관리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가공(부존재)	
전자	非전자 형태로 변환(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無(부존재)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有(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無(부존재)	

< '형태 변환' 여부의 판단기준 >

- 非전자 형태(종이 등) → 전자적 형태
  -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162장의 ○○처리대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 형태로 요청한 경우 가공 아님(정보공개 여부 판단)

• 非전자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에 해당

※ ○○관련 대장을 엑셀파일(또는 한글파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는 가공(부존재)

- 전자적 형태 → 非전자 형태

•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변환하여 공개 가능(정보공개 여부 판단)

※ 엑셀로 관리되는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 가능

※ 별도의 분석 조건(지역 내 기초수급 대상자 수)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적 정보를 非전자 정보로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가공에 해당

※ 녹음파일 형태의 OO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한 경우는 가공(부존재)

< '추출' 여부의 판단기준 >

- 非전자 정보의 '추출'

• 기관의 旣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 건축 인허가 관련 건별로 관리하는 것을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 보유 여부별로 통계 추출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

※ ○○공사가 관리하는 입사원서를 제출자 출신지·대학별, 소지 자격증별 추출은 가공

- 전자적 정보의 '추출'(서울행법 2006구합47759[51])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에 해당

※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추출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상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편집이 곤란하므로 가공

※ 범죄통계 시스템에서 직업별 범죄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현 국회의원 중 범죄자 이름, 정당, 혐의 명, 처분결과'를 추출하는 것은 가공

51) 정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그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서울행법 2006구합47759)

※ 전산자료 가공의 범위에 관한 사례

-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등의 일부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2000. 11. 중앙심판위)
- 대입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의 기초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편집할 수 있고 해당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2009두6001)

Q 047 공직자 메일에서 메일 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A. 공직자 메일은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메일로서 메일 목록은 공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A. 현실적으로는 직무를 위해 주고받은 메일도 있는 반면, 사적인 안부메일 등도 포함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를 위해 직무상 메일 목록과 사적 안부 메일 목록을 구분 추출하기가 곤란하므로 공직자 메일 목록은 비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048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A. 정보공개법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정보 이용상의 주관적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도 그 정보를 공개청구자의 요구대로 변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A. 다만,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6001)

A. 자료추출이 가능하다고 본 예)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 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추출된 원시정보)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추출된 원시정보에서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A. 예)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자료추출이 불가하다고 본 예) 국세청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일자, 담당자, 소속부서, 조회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위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세청이 자신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 생산하여 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284)

< '조합' 여부의 판단기준 >

- 非 전자 정보의 '조합'
  - 기관의 既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 제출일별로 관리하는 전입세대 신고서를 번지별로 분류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
- 전자적 정보의 '조합'
  -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없는 전산정보의 '조합'은 가공에 해당
    ※ 日 단위로 공개하는 조선왕조실록을 年 단위로 공개하려면 별도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므로 가공
    ※ 동별 관리하는 범죄 발생률을 초·중등학교 특정반경 내의 발생률로 공개하는 것은 가공

<유의사항>

-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 관리방식,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가공 여부를 판단
- 별도의 취합·가공이 필요한 청구인 경우, 원 정보 그대로 공개 가능
  - 원본 공개가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

    ※ (종이문서) ○○대학교에 07년~10년도 입학원서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통계(성별, 지역별, 나이별 등)를 요청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의 통계자료는 없으며, 가공하여야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데이터인 입학원서는 존재하므로 입학원서 자체를 부분공개(개인정보 등은 제외)
-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부분공개가 가능하면 가급적 공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보존기간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 >

- (보존기간 경과)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보존기간 경과 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
- (폐기) 청구받은 정보를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보존기간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로 판단 불가

< 유의사항 >

- 보존기간 內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부존재 처리

  *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 이관, 공무원 고의·과실 등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 가능(헌재 2002헌바59[52])

52)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서의 보관·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그와 같이 해석될 필요도 없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하등의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알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불충분하거나 기본권 보장의 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능의 조치를 강제하는 무의미한 것으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정보의 폐기, 국가기록원 등으로의 이관 등은 공공기관이 입증
- 청구받은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 처리예시 >

> 귀하께서 청구하신 '02년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는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으로, '07년에 폐기되어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00두9212)
- 청구 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보부존재)

  ※ '○○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 있는 경우(정보부존재)

    ※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예산 문서 일체'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 교정기간 내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

  -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 청구인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전 부서와 관련된 42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 하고, 다음날 2개 부서와 관련된 15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청구내용 및 그 분량에 비추어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8-13)

< 유의사항 >

- 민원처리법 제22조[53]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 보완 요구는 접수 후 즉시 문서·말·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영 제24조)

< 관련 판례 >

-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대법원 2007두2555[54])
- ○○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2005누25082[55])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기관 내 각 부서는 소관업무 관련 정보부존재 처리에 있어 통일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정보부존재 여부를 판단·결정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53)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를 청구한 사례에서 '관련자료 일체'가 정보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7두2555)

55) '○○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감사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바 위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부존재 정보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결정 통지서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정보 부존재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의 사실을 통보

※ 예 :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 중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정보부존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다만, 공개·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함께 청구된 경우
  -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부존재 처리 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결정·통지

- 청구관리 > 부서청구관리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정보부존재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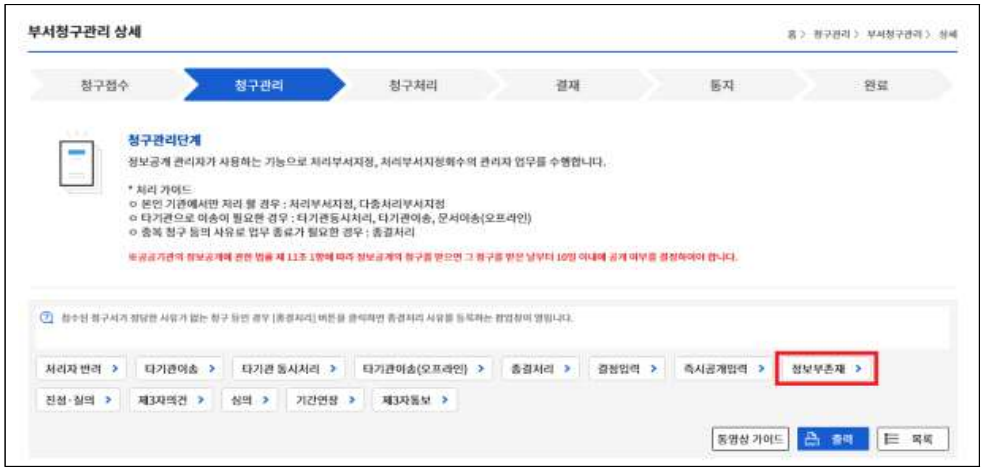

- 정보부존재 통지내용 입력
  - '정보부존재 사유' 선택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통지내용'에 정보부존재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후 통지

<잘된 사례>
-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우리부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요청한 ○○현황의 경우 우리부가 용도별 자료 구분을 시행하지 않아 자료 추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보완하여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서류는 생산일('75.5.26)로부터 보존기간(30년)이 경과되어 우리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사례>
-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체의 사업비 내역서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된 문서는 부존재함을 통보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청구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진정·질의 처리(법 제11조 제5항 제2호)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상 통지로 갈음

      ※ 처리기간 : 질의·상담·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건의민원 14일 이내

      ※ 예 : 귀하께서 제출하신 ○○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 공개 청구가 아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로 답변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시행령 제15조)

-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반드시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음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본인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 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이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인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결정문, 후견인증명서 등

  ※ 임의대리인 예시 : 보험대리인, 손해사정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한 불인정 사례 :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73)

9. 비용 부과·납부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법 제17조 제1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 : 조례로 규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정보의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시행령 제17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56]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함
-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을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함(매체 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수수료 부과 예시

- 전자파일이 아닌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경우 : 사본 수수료의 1/2
- 전자파일이 아닌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하면서 동시에 지움 작업을 하는 경우 : 사본 수수료
- 전자파일을 전자파일로 단순 변환하는 경우(예, 캐드파일→PDF) : 무료
- 전자파일을 출력 후 지움 작업하고 다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경우(예, PDF를 출력하여 지움 작업 후 다시 전자파일로 변환) : 사본 수수료
- 전자파일 상태에서 지움 작업하고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예, 엑셀자료 일부를 지우고 엑셀자료로 제공) : 무료

56)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Q 049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계산

A. '21. 12. 23.부터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A. 따라서, 1GB 미만 파일의 경우에는 800원을, 1GB 초과 2GB 미만 파일의 경우에는 1,600원을 부과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기준)에 다수의 공개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량을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출하면 됩니다.

(예시) 하나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300MB 오디오 파일 1개, 500MB 비디오 파일 1개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 파일의 용량이 총 800MB에 해당하므로 800원을 부과하면 됩니다.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

- 감면비율 :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시행령 제17조 제5항)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Q 050 신문사,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 여부의 결정은 해당 공공기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A. 언론사 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이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감시활동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감면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Q 051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시 우편요금도 감면 대상인지

A.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A.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우편요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시행령 제17조 제6항)

-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폰빌) 납부 가능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가능

Q 052 수수료 정산 시기

A. 보관한 수수료는 다다음주 월요일(14:00~16:00)에 각 이용기관에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예) (정산시기) 6.7(월). ~ 6.11.(금)에 결제한 수수료는 6.21(월)에 이용기관에 정산

A. 정보공개시스템은 시스템에서 청구 접수, 국가기관 등에서 정보공개 처리한 후 수수료를 직접 정산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각 기관의 정산계좌는 PG사에서 관리)

※ PG사(Payment Gateway) : 인터넷 소액결재 서비스 대행사

청구인 비용 납부 후 해당 정보 공개

- 통지 후 청구인에게 해당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은 후 공개
  - 다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종결 처리 가능(시행령 제12조 제4항)
- 수입 인지·증지로 납부 받은 수수료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붙이고 소인 후 공공기관에서 보관

  *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처리한 건은 즉시공개서와 함께 보관

수수료 산정 시 유의사항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 수수료 산정은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Q 053 정보공개 일시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닌 자유재량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A.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의 전후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054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산정

A.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USB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의 성격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055 사본 첫장 수수료 계산 등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

A.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사본(B4 이하 종이출력물) 1장일 경우에도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A. 또한,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와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를 동시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 첫장(B4 이하) 250원은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에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종이문서 A4 1장 스캔과 종이문서 A4 9장 스캔+지움 ☞ 600원
(1장×50원/2) + (기본 250원 + 8장 400원) = 675원(75원 절사하고 600원 부과)

10. 동일·반복 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오·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의 빈도가 많거나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 오·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은 법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 (※ 민법 제2조 제2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정보공개 오·남용 판단기준

-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음(대법원 2014두9349)
- 국민의 알권리 또한 모든 법체계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에서 보장될 수 있음(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8-13)
  - ※ 청구한 정보 모두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양이 워낙 방대하여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 사건 관련 청구는 우리 모든 법체계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 ※ 다만, 1명이 매일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1명이 많은 기관에 동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하루에 여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한 건의 청구에 많은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정만으로 오·남용으로 볼 수는 없음. 즉, 단순히 양을 기준으로 오·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함(인천지법 2015구합51228)
- 그동안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고소와 진정 및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0-18608)

● 동일[57]·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법 제11조의2 제1항)

< 동일 정보 >

-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청구
  - 동일의 기준은 사회 일반 통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종전의 공개 내용과 유사성 및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변동사항이 없는 식품제조업체·숙박시설 등 특정지역의 동일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

※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의 인쇄비, 신고 포상금 등 예산집행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

-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종결 처리하지 않고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 결정해야 함

※ 새로 추가된 사항이더라도 기존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봄

< 반복 청구 >

- 정보공개 결정을 받은 자가 동일 내용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사유의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동일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지 않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청구에 해당 안 됨

※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질의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보부존재 또는 민원답변 처리 후 동일 내용을 계속 청구하는 경우 반복 청구로 봄

※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 청구가 아님

※ 동일 내용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동일 청구로 종결 처리 할 수 없고 각각 해당 기관의 정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함

- 동일 내용을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 청구가 아님

57)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법령 해석례 11-0134)

< 정당한 사유 기준 >

-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라 판단
  -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 등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 처리절차 >

- 내부결재 후 종결 처리 및 청구인 통지

※ 오프라인 신청건의 경우 문서로 통지(별지 제4호의2 서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신청건의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종결사유 등 입력 저장·결재 후 통지

Q 056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법령 해석례 13-0362)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Ⅲ 불복구제 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에 따름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별지 제9호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법 제18조 제4항)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인용[58], 부분 인용[59], 기각[60], 각하[61]로 구분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Q 057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①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의 해당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A.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공개 결정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다만, 권익위법 제39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관이송 및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참고

58) 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59) 부분인용은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60) 기각은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61)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Q 058 다수의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A.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이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의 해당 제3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한 번 더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이의 신청인의 동일 건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059 이의신청 기간(30일)의 계산

A. 민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합니다.

A.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결정통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한 날이 기준이고, 청구인이 서신으로 통지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수취일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060 이의신청 내용은 동일하나 청구인 또는 청구건이 다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제외하고 있는바,

A. 이는 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이 명백하게 동일한 경우로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 필요

  ※ 행정심판위원회 설치기관은 행정심판법 확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3.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집행정지 신청

-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 만약,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됨

집행정지

정보공개의 집행을 통해 제3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

< 관련 판례 >

-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8두13101)

제 4장

정보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비공개 해설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실질비)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대법원 2003두8395[62])

  ※ 검찰보존사무규칙[6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64], 관세법 시행령 제64조[65], 지방자치단체에

6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헌법 제37조의 각 취지와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63)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두1370)

64)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훈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06구합23098)

65)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7조[66]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포괄적 규정 :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67], 형사소송법 제47조[68] , 형법 제126조[69],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7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7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74],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법령 해석례 11-0344)

6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령 해석례 11-0348)

6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원의 내용과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법령 해석례 11-0014)

68)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 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소송관계 서류의 공판 개정 전 원칙적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두3049)

69)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령 해석례 11-0349)

70)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1)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2)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3)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4)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중앙 및 지자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보안유지 등),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및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등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75] 은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포괄적임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76]는 '회의의 비공개' 규정으로 회의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제1호 사유에 해당)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77])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78])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등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79])

---

75)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령 해석례 11-0350)

76)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령 해석례 11-0341)

77)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특정 법인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80])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81])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82])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83])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84])
-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85])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 정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86])

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중앙행심위 2013-05855)

80)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82)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84)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5)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87])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88])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89])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90])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91])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92])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93])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87)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88)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89)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0)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91)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93)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8조[94])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95])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96] 및 시행령 제33조)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노동위원회법 제19조[97])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록 등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94)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5)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본문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서울행법 2005구합28133)

96)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두2913)

97)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061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정보의 공개 여부

A.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838)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도 과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제6호 외에 다른 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음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 해소, 그리고 개별 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서울행법 2002구합33943)

● 비공개 유형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 대상 수립,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한일회담문서(외교관련 문서) 중 일부(서울행법 2002구합33943[98])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된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대법원 2015두46512[99])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통상)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원문(통상, 서울행법 2013구합50999)
- 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문서(외교,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31478)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적 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 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 자료 등(통일 관련)

98) 외국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99) 상대국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등
-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침 및 000 북한 이탈주민 관련 문서 등(서울행법 2013구합56140)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대법원 2001두8254[100])
-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수사 관련 자료(서울행법 2002구합24499[101])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보관시설의 위치, 세부 도면 및 구조도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및 구조도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0)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 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101)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관련 자료와 우리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정보가 아직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의 인적사항, 공작활동 및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에서 일본 내 북한공작원과 관련한 자료에 관하여 무기한 비밀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에 대한 일본 사법당국의 수사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일 사법당국의 긴밀한 수사공조 관계 및 상호신뢰 관계가 심히 훼손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입법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서울행법 2008구합31987)
-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1두3358)

서울시의 적극적 정보공개 사례(측량원도)

행정심판 재결례(비공개) 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적극 공개

☞ 측량원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함(중앙행심 2011-19000)

비공개 유형

- 수사 관계 조회사항[102)]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103)]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104)]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105)]

---

102)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103)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10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105)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 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필요)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106]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개인별 보상금액 등
-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107]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 : 공개(서울행법 2008구합31987[108])
-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자료(청구서, 심사자료, 회의록 등) : 비공개[109]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된 정보 : 공개(서울행법 2007구합6342[110])
-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 공개(대전지법 2014구합103014[111])

106) 공개로 인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107)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함. 특정인이 특별사면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그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상신하는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폭언·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리라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음

109)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보안유공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되어야 함

※ 국가보안유공자라 함은 국가보안법상 범죄자를 체포·처벌하는데 도움을 준 자로서, 보상차원에서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함

110)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11) 갑 회사가 위 협약서에서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 등을 약정했다하더라도 곧바로 주민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갑 회사가 약정한 금전적 지원이 실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공개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 등에 비춰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핵연료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갑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봄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2002구합 24499[112])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10두24913)
-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09두19021[113])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이 해당됨(헌법재판소 94헌마60, 대법원 2002두1342)

---

112)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

1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서울행법 98구3692[114])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 경비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대법원 2010두7048)

114)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대법원 2003두12707[115])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고소인이 청구한 사건 관련 자료 : 부분공개(대법원 2010두7048[116])
-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 관련 정보 : 공개(대법원 2003두12707[117])

---

115)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16)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117)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 신문구독 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관리 대상자의 수용·관리계획 : 비공개(법무부 05-08300[118])
-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 처우 요강 : 비공개(법무부 05-01189[119])
- 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 건수 및 조치내용 : 비공개(대구지법 2006구합1588[120])
- 신분장부(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 : 비공개(부산지법 행정부 2005 구합3029[121])
-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 공개(대전지법 2007구합4409[122])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 상황부, 2001년 학교일지 : 공개(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123])

---

118) "특별관리 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19)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 처우 요강(법무부훈령 제485호)"은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인 "대외비"로 정하여져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120) '○○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 건수 및 조치내용'에 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수용 조치내용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조치내용의 주요 부분을 통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본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121) 원고의 신상 관계 자료 일체(신분장부)는 교정기관의 고유 업무인 교정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수용자의 개별신상과 각종 처우 등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과 판단을 기록한 문서인 사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 속에는 원고의 재판 및 형 집행과정에 관여한 사법·교정 공무원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평가 및 그 방법 등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122) 위 수사보고서에는 원고와 피의자 ○○○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참고인 ○○○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참고인 ○○○의 진술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1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에 따라,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의 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01년 학교일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관련 행정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

- 특정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협의 등의 자료는 유효한 분양계약이나 대여금 채권의 존부 등과 관련된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공개(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28)
- 농지취득자격, 취득농지의 사후관리, 직불금 관련 자료 등이 군계획시설 결정 등 무효확인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하더라도 동 자료는 진행 중인 위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음 : 공개(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353)
-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공개 청구한 것 중, 근무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위 법 제9조 제1항제 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부분공개(대법원 2009두12785)

5.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이에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대법원 2001두8827)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 정책기획중, 정책입안중, 의견수렴중, 회의중, 심사진행중, 자문진행중 등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

비공개 유형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124)]

124) (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062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A.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그 공개 여부 및 내용과 범위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참고로 대학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도록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02179)된 사례가 있습니다.

Q 063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의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정보공개청구 (대법원 2014두38033)

A. 이 사건 보고서는 원고의 민원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만약 이와 같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이르는 내부의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 내용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나 조사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이 사건 보고서는 당사자나 관련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그 안의 검토내용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시험[125] 관련 정보

-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해당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00두6114)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서술형 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Q 064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정보공개청구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125) 헌재 2007헌바107, 헌재 2010헌바291 : 현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종류는 700여 건에 이르고, 시험마다 주관부처, 시험의 목적, 응시자격, 시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해당 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부처가 투여할 수 있는 비용 및 노력의 한계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시험정보의 공개범위 등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준만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시험 주관기관의 전문적·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의 특성, 해당 정보와 관련된 시험관리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그 의미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지나치게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두15936)

A. 참고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출제의 시간·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A. 다만, 직접 출제방식의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Q 065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점수 정보공개청구

A.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 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제2호(무기, 화약물 처리업소의 위치 등),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도 검토 필요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을 취급하는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Q 066 국고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A.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A.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A. 아울러 공개 청구된 정보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부분공개) 결정할 때 제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불복제기 안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Q 067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할 때에도 제6호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Q 068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A. 공모 탈락자의 공개모집(점수표, 심사배점표 및 기준표)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공개모집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점수표의 심사위원 이름을 가리고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위원이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할 경우,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개발 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Q 069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정보공개청구

A.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등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회의록, 발언자 명단 등)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Q 070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 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071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A.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072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A. 위원회 명단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먼저 제6호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A. 최근의 위원명단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의 현장관찰 점수 : 공개(중앙행심 2011-02165[126])
- 청구인 및 총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 : 비공개(보건복지부 09-11338[127])
- 업무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개(외교통상부 09-16929[128])
-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 : 공개/비공개 (법령 해석례 06-0128[129])
- 치과의사 국가시험문제(문제은행방식) : 비공개(대법원 2006두15936[130])
- 사법시험 2차 답안지 : 공개(대법원 2000두6114[131])

---

126) 평가인증 업무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

127)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 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128) 청구 정보는 청구인이 본인의 권리구제 및 피청구인의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청문실시통보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위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문실시통보 문서를 보냈다는 주장만으로 위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

129)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130)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131)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개(서울행정법원 2001구15787[132])
-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 공개(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133])
- 세무사 2차 시험(서술형) 세부 문항별 점수 : 공개(국민권익위원회 2019-24791[134])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언자 명단, 회의록 : 공개/비공개(춘천지법 2004구합1207[135])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 인적사항 : 비공개(대법원 2002두12946[136])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 공개

132)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연구교수 선정 등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33)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는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134) 동 정보만으로는 각 채점위원의 개별 채점결과를 알 수 없는 점, 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항목별 취득 점수를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점, 응시자의 성적에 관한 정보는 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35) ① 외부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 ② 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언자 명단은 비공개, ③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 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13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의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 비공개(대구지법 2006구합820[137])
-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발언자 인적사항 등 : 공개/비공개 (수원지법 2008구합6364[138])
-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지 여부 : 해당됨(대법원 2002두12946 [13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문서 : 공개/비공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1657[140])
- 00도 임도 건설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 공개 (중앙행심 2015－16577[141])

---

137)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 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비공개

138) ① 회의내용은 공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산정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하여 투명성, 정당성, 공공성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점, 회의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차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질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사건 회의록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②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까지 공개된다면 심의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비공개)

139)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140) ① 고충민원 기록서, 재심에 대한 고충민원 기록서, 고충민원 요약서, 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 또는 조사관 성명 등이 주내용으로 공개되어도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개, ② 고충민원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는 공개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141) 타당성 평가 위원은 교수,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등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되는바, 민간위촉 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평가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의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는 점, 민간위촉 위원들도 외부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

-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 연구 목적인 경우 공개(대법원 2007두9877[142])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비공개(중앙행심 2011-25236[143])
- 내부감찰 조사과정에서 담당자들로부터 받은 사건 경위서 : 비공개(대법원 2010두18758[144])
- 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고 우선 시공분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 : 공개(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님) : 비공개(대법원 2013두20301)
- 시험문제가 단답형과 짧은 서술형으로 답이 명확하고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여지가 적은 경우에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 : 공개(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36)
- 다면평가의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 비공개(수원지방법원 2009구합 12656)
- 본인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 : 비공개(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단, 본인의 명부 순위나 점수 등은 공개 가능

142)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시험성적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이루어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상위권 학교로의 선호가 집중되며, 학생들의 좌절감과 학습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능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나, 한편으로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식별 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여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143)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 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144)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가 타당

-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 : 부분공개(대법원 2010두14268[145])
- 정책연구 보고서 전문 : 부분공개(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146])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된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 비공개(대법원 2015두46512[147])
-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 : 비공개(서울행법 2015구합83061[148])
-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가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 : 비공개(국민권익위원회 2016-6379[149])

---

145) 수기 작성 조사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은 아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것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로 비공개

146) 이 사건 정보 전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부분)공개 내지 비공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막연히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47) 이 사건 처분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만 이루어진 단계였고,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단계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 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각종 요구로 협정문이 당초 예정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실무자들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특정한 입장에 영합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148)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게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인 점, 공개 이후에는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집필·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드는 점, 교육부장관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 시점보다 수개월 먼저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비하여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악영향이 훨씬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함

149) 감찰업무 특성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 당자사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향후 피감찰자들이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감사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의 감찰업무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150] 또는 자유[151]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대법원 2012다49933)[152]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150)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151) 사생활의 자유 :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함

15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1두2361)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대법원 2012다 49933)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 (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해당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Q 073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A. 청구자(임차인)가 공개 청구한 "임대인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의 정보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비교·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074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청구

A. 장애인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A.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82조의2에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시·군·구의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장애인의 장애내역 등의 정보가 누설되어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의 해당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명단 제공요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 따라서 장애인 명단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취지, 그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075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개별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A.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설령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76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A. 특정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077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A.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A. 청구인 본인만이 촬영된 경우 본인에게 공개 가능할 것이나, 청구자 외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타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을 것이며, 마스킹 처리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078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A.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의견서'의 내용에 개별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의견을 공개할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의 소지 및 시시비비에 휘말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의 규정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079 토지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A.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토지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및 공람에 따른 수용 동의율 확인 관련 서류 일체로서, 사업 시행자인 ○○(주)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중 도시개발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유토지 현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감시 기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Q 08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A.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물건조서의 내용 및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등과 물건소유자의 성명,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물건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금액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작성된 보상협의요청서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액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의 정보는 공개 가능
- 인사교류 신청내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의 정보는 공개 가능

081 기관장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청구한 '기관장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 내역은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082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인사발령 기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083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비공개가 가능한 대표 정보로 ①근무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Q 084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A. 근무상황부에 포함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육아시간, 결근, 조퇴, 외출, 당직휴무, 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기타 등의 사유 중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연가, 공가 일수 등 일반적인 통계 수준은 공개 가능(단, 특정인의 연가 및 병가 일수 등은 통계 수준일지라도 특정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가능)

A.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의 경우는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 085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A.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나, 판·검사는 '법관징계법' 제26조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관련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Q 086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A.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회원 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 이름과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A. 검토 여하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청구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Q 087 건축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A. "건축 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됨으로써 해당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 ②건축물의 설계도·설비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됨으로써 준공 후 해당 건축시설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A.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08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정보공개청구

A.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서류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증빙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 사용하면 해당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서울고법 2001누17274)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Q 089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①「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신청자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②「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법제처 07-0253)하여야 할 것이며,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등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산재보험법 제84조의2 부정수급자 명단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판단 기준[153]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153)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1두6425)

Q 090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공개 동의나 단서 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단서 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의 권리구제(사익)를 비교·형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A.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 받았다면 이는 청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Q 091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A. 우선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 동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서류로는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 등) 상황에 관련된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각호,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채권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중앙행정심판위 2007-14671, 2007-19790[154])의 성명·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조약·협정 조인자명 등을 들 수 있음

-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법령 해석례 06-0131)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고소인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 비공개(대법원 2011두2361[155])

154)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포함

155)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대법원 2002두1342[156])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 : 공개(서울행법 2008구합31987[157])
- 외부위원 명단 : 공개(국무총리 09-04617[158])
-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 공개(행정안전부 09-12524)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 공개(노동부 09-17310)
- 의결서와 회의록 : 공개(국무총리 09-03666[159])
-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 : 공개(대법원 2005두241[160])
-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 공개 또는 비공개(공공정보정책과-1147[161])
-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 공개(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162])

---

156)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연락처 (전화번호 등), 그 외 직업·나이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주소·연락처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직업, 나이 등의 인적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음

157)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자의 신분이나 담당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 없으므로 공개

158)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리 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9) 특정 발언의 발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160)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 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161)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의 공개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

- 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협의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부분 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 필요성 없음(서울행법 2009구합4739[163])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비공개(대법원 2001두6425[164])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비공개(대전고등법원 2001누2162[165])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에 포함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 비공개(서울고법 2001누17274[166])

162) 편찬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한 위원이 누구인지, 전문성이 있는지, 편향된 경력 등으로 불신을 사는 인물이 아닌지 등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도 직결되어 역사교과서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집필이 중단되는 등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 되었다거나 이른바 '신상털기'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에 우선할 정도로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현대사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정은, 해당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점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할 수는 없다.

163) 위의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을 부분 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 만을 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그 공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부분 공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임

164)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165)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증빙으로서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함

166)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 사용하면 해당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에 포함된 지출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 : 공개(서울고법 2001누17247[167])
- 공소장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공개(서울고법 2005누17067[168])
- 세무조사 결과 : 비공개(서울고법 94구39262[169])
- 징계대상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 : 공개(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27298[170])

  ※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와 법관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시 징계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음
- 기관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비공개(대법원 2003두8302[171])

---

167) 지출대상자,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도 지출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그 집행업무가 기밀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출 증빙이 사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정보에 해당

168)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공개

169)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나, 피고가 지침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170) 징계대상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 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171) 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하였으나, 제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보자에 관한 정보 : 공개(연락처는 비공개)(서울행법 2008구합26466[172])
- 성과급 순위명부 : 비공개(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173])
- 보조금 지급내역 중 개인의 성명 : 비공개(대법원 2009두14224[174])
-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및 주소 공개(경찰청 10-01126[175])
-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 공개(법령 해석례 06-0131[176])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소, 주택유무 사실 등 : 비공개(서울행법 2009구합40575[177])

172) 이 사건 정보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권리구제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의 공개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73)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임

174) 고속철도역의 유치위원회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

175)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제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이름, 주소"만 한정하여 공개

176)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7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이므로 비공개

-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 비공개(행정자치부 05-17455[178])
-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 :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 05-16330[179])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 비공개(수원지법 2005구합5292[180])
-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공무원명(무기명),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사유, 징계처분, 징계사유 세부내용 : 공개[181]
- 출장비 내역 : 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3445[182])

---

178)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79)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진정서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8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181) 청구인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공개하되 징계사유 세부내용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징계 관련자들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구체적 징계사유를 일부 선별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서울고등법원 2006누30531),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558)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 세부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개 필요

182)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출장비는 관련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라 하여도 단서 조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 : 부분공개(국무총리행정심판위 06-14443[183])
-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 : 공개(강원도행정심판위 2020-229[18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추진위원회 등의 의사록 중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한 이름, 주소 : 공개(법령 해석례 13-0110[185])
-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천대상자 명단 및 응시자 체력검정기록 : 명단(비공개), 기록(부분공개)(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338)
- 개인 주주의 성명·출자액·신규발행 주식 수·총투자액·주식 수·주식 대금총액·업종·소속 및 직위·국적 등 개인 주주에 관한 부분 : 비공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 국민이 00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문 : 개인정보 제외하고 부분공개(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 민원상담 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공개(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 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9463)
-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73[186])

18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성명, 수당지급 총 시간, 총 액수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건에서, 이 정보는 원시적으로 피청구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공개로 인하여 실현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익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직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배제된 총 시간 및 액수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지급대상자 성명은 비공개)

184) 초과근무에 관한 정보공개가 사생활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청구인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초과근무일, 초과근무시간은 물론 초과근무자의 이름, 직급, 근무내역도 공개하여야 함

1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86)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청구 민원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업무추진비로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 비공개(창원지법 2016구합832[187])
-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제3자의 콜센터 민원접수 통화녹음 내용 : 비공개(국민권익위원회 2016-15350[188])

7.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제7호)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 2012-24651, 대법원 2007두1798[189])

---

187)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지출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이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금품 지출 목적의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

188) 이 사건 정보는 익명의 신고자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120 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할 때의 통화녹음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청구인이 아닌 신고자와 상담사의 음성정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청구인이 이사건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하여 형사상 절차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획득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해당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등의 영업특성, 영업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중앙행정심판위 2012-24651)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정부법무공단 2012-440)

●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18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Q 092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798)

A.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093 검인계약서 매매 일자, 매매 금액 정보공개청구

A. "○○년 당시 (사)위원회가 취득한 계약서상 매매 일자와 매매 금액"의 정보는 '법인의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A. 참고로 판례(서울고법 2001누17274)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 제7호의 비공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①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②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③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이 있습니다.

Q 094 건축물 등의 도면 정보공개청구

A.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여부는 해당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도면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해당 건축물의 경비, 보안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95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정보공개청구

A. 사업체명과 그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인력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한편 특정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용도나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 등의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기업경쟁력 등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알려짐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96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 대비표 정보공개청구

A.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등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가 가능 할 것입니다.

A. 다만,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에는 각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그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 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가 받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Q 97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A.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참조)

A.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는 등은 법인 등의 경우와 같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Q 98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법령 해석례 06-0132)

A.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 결의서'상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 참고로,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노동부 2005-16132)가 있습니다.

A.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99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 내역의 범위

A.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7두1798)

A. 예외적으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가 가능한 단서조항 중 '가목'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이는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이며, '나목'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이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내역 등은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참고로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 100 관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업소명, 소재지) 정보공개청구 (인천지법 2015구합1070)

A. 이 사건 정보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 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A. 또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외부에 알릴 수 밖에 없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

Q 101 단체협약 정보 공개 가능 여부

A. 노사간 체결된 개별 단체협약에는 임금수준, 각종 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사측으로서는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여러 사업장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각 사업장과의 협상이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이 공개될 경우 타 업체와의 단체협상 등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노동조합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이를 취소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3-105)

A. 단체협약서는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조활동, 단체교섭,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 및 퇴직금, 인사, 표창 및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노조원들에게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비공개 의견서에 반하여 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국민권익위원회 2013-07528)

Q 102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A.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

A.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령 해석례 06-0037)

A. 다만,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집행처별 세부 집행금액은 언론사 등의 법인의 매출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언론사 등의 광고비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언론사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경영상·영업상 정보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06210)

A. 따라서, 광고·홍보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청구내용,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 : 비공개(대법원 2008두13392[190])
-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국적에 관한 사항 :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6193)
-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8302[191])
-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 : 원칙적 공개(법제처 11-0395[192])

19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7호의 취지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91)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19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응급센터 시설, 관련 인력 및 장비에 관한 내역, 구비 상황 그리고 운영계획 : 부분공개(국무총리 09-09175[193])
-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 공개(서울행법 2005구합16833[194])
-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 공개(인천지법 99구1536[195])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 : 공개(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2398[196])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 공개(대법원 2006두20587[197])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를 개발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건축 및 분양한 ○○지구 아파트와 관련하여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에 대한 정보 : 공개(대법원 2011두4602)
-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 공개(대법원 2007두1798[198])

---

19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등에 의하면 지정신청서, 도면, 현황, 계획서 등은 공개가 가능(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개인정보는 비공개 함

194) 요양기관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중 상위 또는 하위등급에 속하는 기관의 수와 주소·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함

195)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업소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하여야 하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

196)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인해 공사 등에게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197)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198)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큼

-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 내역 등이 포함된 과세 정보 : 비공개(○○고등법원 2002누19086[199])
-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내역 중 외주처, 제작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 : 공개(서울행법 2006구합24183[200])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비공개(대법원 2003두8302[201])
-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 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 공개(대법원 2003두9459[202])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 비공개(수원지법 2005구합5292[203])
-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액(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 공개(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71[204])

---

199) 문제의 과세정보에는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사의 수입·지출상황,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납세 내역과 추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물론 제1호 해당사항도 있고 - 제7호에도 해당하여 비공개하여야 함

200) 피고의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201)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단,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개 가능

202)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 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03)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임

204)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큼.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정당함

- ○○기업의 '2012년 ○○대학교 병원에서 산정한 청소용역 원가산정 내역서', '청소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낙찰률 관련 자료' : 공개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059[205])
-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 건설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법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 관리·운영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음 : 공개(대법원 2010두24647[206])
- 택시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 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07528)
- 집행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 공개(법령 해석례 06-0037[207])
- 법인 주주의 명칭, 법인 등록번호, 출자액, 대표이사의 성명 등 : 공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

205)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원가산정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이 다른 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영업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원고와 같은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현재 근로 조건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곤란한 바,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개함이 정당함

206) 참가인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권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도로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가 타당함

207)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택시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및 보수총액 신고서(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연간보수총액, 월평균 보수, 월별 근로자수 등) : 공개(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20)
-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된 사업비용 등 원가정보 : 부분공개(대법원 2014두5477)
-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추진현황 및 실시협약서 : 공개(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 다만, 출자자 및 출자비율, 출자금액 등 컨소시엄 구성내용, 설계정보, 총민간투자비, 상환계획, 사업수익률 등 재무모델 등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의 설비 및 장비현황, 낙찰업체들의 지분율,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사업추진 구성·운영계획 등 관련 정보 :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 회사의 사업실적과 소프트웨어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 소프트웨어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계약서 작성일자 :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5236)
- 화장품 품목별로 이미 공개된 '전 성분 정보'라도 대다수 품목에 관한 것으로서 함께 공개 청구된 경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공개(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업체 이름 : 공개(대법원 2016두40283[208])
- 감사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 : 공개(인천지법 2018구합52628[209])
-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초자료 : 비공개(국민권익위원회 2017-03588[210])

---

208)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및 공개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직결된 경우라면,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는 단순히 사적인 정보에 불과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209) 유치원 명단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결과 적발된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유치원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유치원 원장은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치원장 명단의 공개로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됨
-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내역(국유재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07824[211])

210) 이 사건 정보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기초 산출내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등 세부 산출내역은 해당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211) 이 사건 정보 중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 국유지의 관리, 무주의 국유재산 조사 등과 같은 각종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6580[212])
-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 및 협의내용과 협의결과 : 공개(환경부 2005-10233[213])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 : 공개(건설교통부 2001-03898[214])
- 00풍력발전기 조성을 위한 00군계획시설 관련 불협의 공문 일체 : 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9174[215])

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재산상황 등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감시목적을 위한 공익보다 위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이 더욱 크므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으로 집계·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공개

212) ○○대학이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내역과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에 따라 가계약이 해지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취득 부동산의 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 및 계약조건 등 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14)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됨.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215) ○○군 국유림 지역에 풍력발전기 21기를 조성하려는 ○○군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해당 국유림에 대한 사용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협의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부동산 투기 내지는 매점매석 등을 초래할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핵심 내용인 피청구인의 협의 불가 사유가 이미 2012. 1. 8.자 ○○신문을 통해 공개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

- 국유림 주변의 사유림에 대한 투기나 매점매석 우려 등으로 전국 모든 국유림의 필지별 재산명세 정보 :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09112)
-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00지구 택지조성원가·택지분양가·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 시공사 관련 계약서 및 직접공사비 관련자료 일체, 건축비 산출내역 등 : 공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02297)

  ※ ○○○○1지구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택지비 산정내역 및 산정근거, 나. 준공조서, 다. 용지비 내역서(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및 그 부대비용), ○○○○1지구 택지분양가 및 관련자료 일체(기반시설분담금 상세내역), ○○○○2단지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시 건축비 산정내역 및 산정근거, 나. 준공원가 계산서, 다. 원가 보조부), 시공사 관련된 계약서 일체와 직접공사비 관련자료 일체(공사도급 계약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마진 등 실질적인 건축비의 산출내역 및 관련자료(가. 준공조서, 나. 공사 시방서)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비공개 해설

1. 법령 등에 관한 정보

● 법령, 고시 등

-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이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해당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또한 고시란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 일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 알리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다. 국회제출 법률안 및 그 참고자료로서 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조문은 정부의 의사결정시 의회, 국무회의 등에 제출되는 것이지만, 법률안 등의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제출 이후가 적당할 것이다.

나.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한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에는 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정보, 입안을 위한 조사에 관한 정보, 법령심사기관에 관한 설명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고 당해 입안사무 또는 법령개정 등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ⅰ)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ⅱ) 조세의 부과·징수 (ⅲ)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ⅳ) 섭외·교섭의 방침 또는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탈법행위의 조장,

법령위반 행위의 교묘화·은폐를 초래하거나 교섭 등의 난항을 초래하는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의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보안경비 또는 피수용자의 처우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의 인사사무, 청사·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할 때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훈령·지침은 소관 사무에 관한 명령을 시달하기 위해 소속 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정 등을 명령·시달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각 공공기관의 지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의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직무운영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령·지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2.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 및 기타 회의 등에 관한 정보

● 국무회의 등에 관한 정보

- 국무회의 결정, 국무회의 보고, 관계 장관회의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 공개함

해 설

가.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결정, 보고 및 국무회의의 전 단계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 장관회의의 합의는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도기관 등을 통하거나 국민의 청구에 응하여 공개할 수 있다.

나. 다만, 타국 및 국제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당해 의사결정 기관의 자체판단에 의해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회 등에 관한 정보

-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개최현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건의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함
  - i)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정보
  - ii)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iii)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심의회, 위원회 등이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체의 기관을 말한다. 본 항목에서는 그 개최상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건의, 의사록, 회의제출 자료의 취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심의회 등 위원명부에 대해서는 항목 3. 인사관계 문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나. i)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회 등으로서의 자주성, 자립을 배려한 것이며 ii) 및 iii)에 대해서는 의사운용규정 등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회, 위원회 등의 목적 및 임무에 비추어 동일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록의 취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 다만, 심의회, 위원회에 있어서 의사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응하여 상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회, 위원회 등의 부회, 분과회, 소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내용이 다양하여 본 항목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등 관련 정보

- 법령, 법령에 근거한 훈령·지침, 국무회의 결정 또는 차관회의 등에 기초하여 개최된 회의, 협의회 등(당해 행정기관의 직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의 개최 취지, 구성원 또는 개최현황에 관한 정보 및 회의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의사록 또는 회의제출 자료 중 공개함으로써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본 항목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회의는 법령 및 훈령 등에 근거한 대외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는 회의로서 복수 부처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에서 대상으로 하는 회의 이외에도 각 부처간의 사무담당자의 연락회의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들의 회의 등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의에서 결정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내부 회의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 항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 회의에 관한 문서 중에서 개최취지, 구성원, 개최상황에 관한 정보 및 회의의 결정·합의는 공개 할 수 있다. 의사록 및 회의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

3. 인사 및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

  ⅰ)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결과

  ⅱ)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위원 명부

  ⅲ)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

해 설

가.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의 ⅰ)~ⅲ)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성명·소속·직위 정도이다.

나. ⅰ)의 간부 직원의 인사이동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ⅱ)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회와 같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ⅲ)의 서훈 등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통상 명예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정보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연수실시 결과 개요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 공개함으로써 임면, 급여 등의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
- 시험문제 및 그 작성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으로 공개함으로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연수실시 결과 개요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나. 임의로 보고 등을 요구하는 문서는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로 인해 명확한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즉, 공개로 인해 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후의 정보수집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채용시험, 내부승진시험 등의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는 출제분야가 좁아 출제가 한정되는 시험문제, 시험문제의 작성 요령, 면접평가기준 등의 시험 채점기준, 합격·불합격의 기준,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시험실시 요령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직원단체 등의 정보를 기록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직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방침, 교섭결과, 또는 직원단체 등의 요구서 등은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 자격시험 수험절차, 실무경험 심사기준 등의 시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시험의 채점, 합격의 기준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험실시 기관에 의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자격시험의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또는 합격판정 위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는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에 관해서 당해 사무에의 종사, 관리감독자에의 취임 또는 일정 칭호를 인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시험 및 대학입학 자격 검정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출제분야가 협소 하거나 실기시험장 시설·설비에 제약이 있어 출제가 한정되어 그 공개가 시험실시 기관 등의 판정·평가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예상 된다. 따라서 시험의 채점기준, 합격·불합격의 기준과 함께 시험문제가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시험문제의 작성요령이나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실시의 요령에 대해서도 시험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합격·불합격 판정 위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합격자의 명단은 통상 게시판 등에 공개되지만 대학입학 자격 검정 합격자 명단 등의 경우와 같이 합격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4. 예산·결산·회계 관련 정보

예 산

- 예산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예산의 내용에 관한 그 외의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예산작성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정보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세입·세출 등의 잠정계산의 결정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세출 등의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잠정계산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은 국가의 금전에 의한 수지의 예정계획으로서의 예산, 예산작성을 위한 세입·세출 등의 견적, 예산의 실행결과로서의 결산, 수입지출의 관리절차 작용으로서의 회계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참고를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에 관한 그 외의 문서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결 산

- 결산서 및 결산 관련 문서, 감사원의 검사보고에 관한 설명서는 공개
- 회계검사를 위해 제출 또는 취득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원의 적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결산은 일회계년도 간의 세입세출의 결정적 계산이며 예산집행이 완결되고 회계 검사원의 검사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나. 결산에 관한 정보 중에서 검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원의 질문·확인, 피검사자측의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개선방안의 검토, 지도 또는 검사보고작성의 자료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면 검사과정에서의 검사내용이나 피검사인측의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감사원은 문서에 의한 질문을 행하는 것이 곤란한 피검사인측과의 정보교류의 중요한 수단을 잃고, 공정하고 적정한 검사활동을 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피검사자 측에서도 자주적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공개로 인해 감사원의 적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회 계

- 세입의 징수·수납, 지출부담행위, 지급 및 세출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수입·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을 기재한 문서,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로서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i) 공개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의 정보수집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ii)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iii)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i), ii)에 대해서는 수사비, 마약거래 활동비, 국방조사 위탁비, 보상비 등과 예정 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은 사무의 성격상 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한다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할 수 있다.

나. iii)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자금의 구체적 운용처, 방법을 공개하면 시장 등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있다.

5.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참가 절차·결과 관련 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공고사항(낙찰자 심사기준 등),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유자격자 명부, 낙찰자 심사결과 등 입찰 참가의 절차·결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위의 정보 중 참가자격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등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함(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여부 검토)

해 설

입찰에 부치는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관보 등에 의해 공고), 입찰 결격사유, 경쟁계약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 기준, 유자격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는 그 공개가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있다.

예정가격 관련 정보

-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예정가격조서 등) 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보(당해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단가 등)를 공개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동일한 관점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

● 체결 과정·결과 관련 정보

-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개.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i) 설계·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ii)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설설비의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 iii) 용지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 중 공개함으로써 교섭의 난항·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초래하는 등 당해 또는 장래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계약방식 선정의 이유, 입찰계약의 경우의 입찰자명, 입찰가격, 낙찰자명, 낙찰가격 등 계약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정보 및 계약이행의 확인에 관한 규정·검사조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i) ~ iii)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국유재산 현재액 구좌별 조서 등 국유재산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 보통재산의 대부, 매매와 지불 등의 보고서, 국유재산의 환경결정서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임
- 다만, 공개로 인해 처분 등의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이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국유재산의 현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 중에 처분예정지의 평가액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입찰 등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국유재산 정보공개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제76조)

나. 계약서 등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이용계획, 자금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관리부 등 물품관리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물품 관리계획, 물품 수령서, 물품의 망실, 손상 등의 보고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예정가격, 구입예정 단위가 추측될 수 있는 정보 등 공개로 인해 물품관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7. 행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 국가의 행정기관이 수립한 행정운영에 관한 중장기의 기본적인 계획, 목표, 방침(행정계획) 및 목표달성 상황 등 행정계획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다만, 개개의 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해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행정계획"이란 대상기간이 중장기(3~5년 이상)이고 국가의 행정시책의 기본에 관한 것을 말하며, 대상지역의 범위가 반드시 전국적인 수준일 필요는 없다. 행정계획은 국가 행정의 기본에 관한 것이며, 행정계획의 원활하고 적정한

해 설

수행에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행정계획 관계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개 노력이 필요하다.

나. 행정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달성 상황 등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행정계획 중의 개개의 사무사업의 실시상황을 기록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임의적인 협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고,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자에게 지장이 초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이후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계획 확정 과정에 관한 정보

-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 행정계획의 확정을 위해 실시된 조사연구의 결과 등 당해 행정계획의 확정 과정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ⅰ)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관계자의 의견조사에 관한 내용 중 공개함으로써 조사에 협조를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란 수립한 행정계획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연구의 결과'란 당해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것을 말하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행한 것 외에 외부위탁에 의한 조사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의 조사연구의 결과와 같이 당해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해 특별히 정리한 것이 아닌 정보는 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ⅰ)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는 계획 확정을 위해 자유로운 검토·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장래 동종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현재 수립된 행정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와 같은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수

해 설

있다. 또한, 행정계획수립 후에도 공개로 인해 행정계획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행정계획 전체를 실시하는데 적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행정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중요한 검토·판단자료가 되는 정보로 공개로 인해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8. 연구성과 등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및 그 외의 공공기관에 의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로 인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등의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정보,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에 있어서 보안경비·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정보 또는 희소 동식물 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본 항목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고 있는 연구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탁연구, 학계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연구나 부처 내 TF에 의한 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연구'란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론을 세우고, 신지식을 얻거나 기존 지식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지적,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실태 파악이나 분석·정리에 그치는 조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연구자가 발표하기 전의 연구 테마, 내용, 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저작권(공표권, 복제권) 또는 공업소유권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노하우 등)을 취득하는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해 설

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마. 일정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판정·평가의 방법, 희소 동식물의 서식지 등 공개로 인해 행정사무의 목적, 효과를 훼손하고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서 행해지는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9. 출입검사, 조세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정보

● 출입검사, 단속 등에 관한 정보

-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의 권한 행사 및 법령에 기초한 명령·금지의 기본적 방침과 그 결과의 개요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출입검사 등의 시기, 방법 등 미리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대상자에게 알리는 출입검사의 목적과 실효를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의 범위, 방법 등의 상세를 기재한 실시계획이나 실시요령
  - 정보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에 관한 통보나 정보
  - 공개하는 것에 의해 대상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징수·수거자료, 출입검사 등의 결과, 결과에 따른 요구, 처분, 개선조치에 관한 정보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사업소, 사무소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무·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그 시정을 통해 적법, 적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인 권한행사인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감찰 등 법령에 기한 일방적인 일정행위·수인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출입검사 등에 관한 정보 중에 개인, 법인 등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또한 행정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본방침 또는 결과의 개요는 공개할 수 있다.

해 설

다.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라도 개인이나 법인 등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및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 세수의 내역, 체납액, 조세의 상담실적, 세무조사 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개별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납부, 결정, 불복신청, 체납처분에 관한 정보 또는 세무조사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개로 인해 조세의 부과, 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세수의 내역, 세무조사 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징수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 및 납세의 고지에 관한 문서, 납세자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의 수령에 관한 문서,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에 강제징수에 관한 문서 등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 등의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사의 방법, 범위 등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0. 지도·조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보

기술·경영 등의 지도·조언에 관한 정보

- 신청·요청에 응하여 행하는 기술·경영·직업소개·훈련 등의 지도·조언 지침, 요령, 지도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

해 설

가. 본 항목의 대상정보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신고·요청에 의해 행하는 조성, 육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조언에 관한 정보이다. 지도·조언의 지침, 요령은 공개하지만 개별의 신고·요청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나. 다만, 사업자단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행하는 지도사항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도·감독에 관한 정보

-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기본적 방침,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정보 및 지도·감독 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정보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혹은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또는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사업자 등이 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의 여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당한지 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를 행하거나 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어 일정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보를 이 항목의 대상으로 한다.
나. 지도·감독은 권한 및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출입검사 등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배경으로 행하는 행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임무, 권한 또는 소관 사무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사업자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감독, 제휴협력 활동을 말한다.

해 설

라. 사업자의 경영·활동·설비, 물건의 제조·판매·사용 등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의 사무운영의 지침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기본방침은 공개할 수 있다.
마. 지도·감독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단체의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법령 등에 권고, 지시 등에 따르지 않는 때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개로 인해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1. 인·허가에 관한 정보

● 신청 절차, 심사 기준에 관한 정보

- 인·허가·신고 등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 심사 기준은 공개
-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인·허가 등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에 관한 문서는 국민이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기준의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인·허가 사무의 목적이 훼손되는 등 심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개개의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등

-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인·허가대장, 업자·보유자 등록부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중에게 위험하고 특히 신중하고 엄정한 취급을 요하는 물건(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취급 또는 그 관련 설비·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의 인허가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공사업 또는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생산 노하우,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중 공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나. 허가 등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특수법인 등의 사무·사업에 관한 신청서·첨부서류 중에는 계산내역이나 용지취득 등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사업 (공공사업,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2.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①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결과 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③ 공공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누계)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및 그것에 근거한 협정서 등 계산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i)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ii)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방침 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iii) 조사연구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사업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iv)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공공사업에는 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외에 청사,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행하여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비공개의 판단에는 본 항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나. 공공사업에는 국민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정비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조사결과 보고서, 사업실적, 공공용지 취득 면적·손실보상액 등은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 계산요령 등 계산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이나 계산 기준은 적정한 견적이나 기준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다. i), ii)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계산단가, 개별 사업개소 또는 보상내용, 용지취득의 교섭방침 등이 있는데 당해 사업 또는 계속·반복하여 실시하는 동종 사업의 계약사무,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라. iii)의 '사업계획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검토,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국민에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장래에 동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수립사무에 관한 공개로 인해 상기와 같이 현저한 지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후에도 공개로 인해 사업계획의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마. iv)의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교섭사무나 계획수립사무에 있어서 중요한 검토· 판단자료가 되는 것이다.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의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3. 융자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

융자에 관한 정보

- 국가가 스스로 행한 융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계 정보의 기준을 준용한다.

해 설

융자에 관한 정보란 국가가 행하는 융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융자관계 정보는 대부에 관한 정보와 상환에 관한 정보로 대별되지만, 이들에 대한 공개·비공개의 판단은 보조금 관계 정보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한 정보

- 보조금 교부 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등 보조금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임

해 설

보조금이란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 보조금 교부사무와 보조사업의 적정 집행이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보조금이 갖는 공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 관계 정보는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 교부 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등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개개의 신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그 외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관한 정보 및 교부신청 전 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정(명시), 보조사업비의 계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교부신청서나 교부결정 통지서 등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에 관한 정보나 사업완료서 등 개개 보조사업의 진행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당해 보조사업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장래의 동종 사무에 대해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

나.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4. 보험사업, 지급 및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정보

보험사업에 관한 정보

-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의 구조, 가입·수급 등의 절차, 인정기준, 보험료 및 수급액의 산정방법 등은 공개
- 수급 등의 인정에 관한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부정 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보험재정의 전망, 급부·징수상황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자료는 공개
- 개개 보험의 가입·수급,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신고·납부, 인정결정, 불복신청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 기업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행한 행정활동에서 작성·취득한 정보 중 국가가 경영하는 보험사업 관련 정보로서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이 해당된다.
나. 보험사업은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으로서 제도의 구조, 절차, 인정 기준, 보험료 및 급부액의 산정방법 등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개로 인해 부정수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진료보수명세서, 피보험자의 가입기록, 보험계약서 등 개인정보, 기업정보가 기록 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지급(금전, 현물)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사업, 원호사업, 학교교육사업 등에 있어서 금전 지급, 현물 지급에 관한 사업의 개요, 지급 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

해 설

'지급'이란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이며, 사업의 개요, 지급 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급의 인정에 관계된 판정·평가 방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로 인해 부정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개의 신청서, 인정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시설의 관리운영(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 학교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행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①정비의 방침, 계획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 ②소장품, 전시실, 훈련실 등의 시설의 설비·비품에 관한 정보 ③운영방침, 연수·훈련프로그램, 수험절차, 이용안내, 입소규칙 등 시설의 운영방법에 관한 정보 ④학생수, 입관자 수, 입원자 수, 수업료, 입장료 등 시설의 이용상황에 관한 정보 ⑤교육, 연수, 치료,

생활지도, 훈련 등에 관한 기록 등 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대학 등에 있어서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에 있어서 교육활동 또는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공공시설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서비스를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정비계획, 설비·비품, 운영방법, 이용상황,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학 등의 교육 또는 연구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는 공개로 인해 시설 등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있거나 불신감의 초래, 학생과의 신뢰관계의 손상 및 학생에 대해 불안감이나 동요를 주는 경우, 시설에 있어서 교육목적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진료활동에 관한 정보와 관련,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해당 병원의 사망률, 치료에 관한 기록 등 공개로 인해 환자에게 예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치료·회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5. 대외관계에 관한 정보

- ① 조약, 협정, 결의 등 국제간의 합의문서, ② 그 외의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 (회의·회담에 관한 것, 경제협력에 관한 것, 자국민 보호에 관한 것, 조약·협정에 관한 것, 국제정세에 관한 것,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것 등)로서 공개하는 경우 국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자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외교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함

16. 통계조사 등에 관한 정보

통계조사 결과, 관측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 통계조사의 결과 및 전문적 조사기관이 행한 자연현상의 관측, 국토·수로의 측량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법령에 의해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지정 통계조사의 결과 또는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한 시험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통계수치, 계측수치,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를 대상으로 한다.

나. 통계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가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통계조사의 결과 중에서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한 시험조사, 법령에 의해 공개의무를 면제하는 지정 통계조사의 결과 등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업무통계에 관한 정보

-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건수, 위반사항 단속건수 등의 행정활동의 실적 및 대상업자·시설 수, 화재·사고의 발생 수 등의 행정대상 지표는 원칙적으로 공개
- 공개로 인해 검사, 조사, 단속 등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대상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인 업무통계, 사무수행에 대하여 집계된 행정활동 실적을 나타내는 데이터나 행정대상 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분류·정리가 매우 상세한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검사·조사 또는 거래의 방법이나 위법행위의 양태·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경우 검사 등의 목적 및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7. 고충·진정에 관한 정보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

-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진정 등의 처리규정 등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고충·진정 관계 정보에는 진정서, 업계·단체의 제안 등도 포함된다. 고충상담, 진정 등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인과 수리행정기관 등 관계자간의 문제이며, 신청인도 당사자 간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고충, 진정의 정보는 당사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고충, 진정 등의 수리절차, 수리행정기관 내부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규정한 정보 중에서 판단, 처리의 방침·방법에 관한 정보, 처리방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적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개별 고충·진정 등에 관한 정보

- 고충서, 진정서 등의 문서, 처리표, 알선(주선)서, 의견조회서, 조사서 등의 개별사업 처리에 관한 정보 또는 사안에 대한 답변서로서 공개함에 따라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개별 사안의 내용을 기술한 정보, 처리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정보이다.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판단한다. 해당 행정 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공개·비공개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8. 불복신청, 소송에 관한 정보

소송에 관한 정보

- 소송에 관한 통계 및 개별의 판례·재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개별 재판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향후 소송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또한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사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향후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소송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연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지만 개별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향후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나.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다. 소송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 소송 계류 중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된 경우, 공개로 인해 국가에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종료 후에도 장래 동종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의 당사자로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 소송사무의 진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에 관한 정보

- 절차에 관한 정보
  - 행정기관에 의한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사무절차규정 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처리, 심리의 방법에 관한 정보로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개별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정보
  - 개별 행정심판 신청서, 심리기록 및 재결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 심리과정이 비공개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행정심판 이외의 개별 약식쟁송 및 알선·조정·중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사안처리,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공공기관 및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공개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나.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대해서는 절차를 규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과의 교섭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처리, 심리의 절차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공해분쟁의 재정(裁定), 부당 근로행위의 심판, 공정거래법상의 심판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심리가 준사법적인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심리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보관하는 소송기록에 준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비밀, 사업자의 비밀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심리과정이 비공개되는 경우 또는 공개로 인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관에 의한 알선·조정·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 기관은 분쟁 해결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별표 / 서식

별표	수수료[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호의2	정보공개 청구서
별지 제2호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별지 제3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3호의2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별지 제4호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4호의2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종결 등) 통지서
별지 제4호의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6호	제3자 의견 청취서
별지 제6호의2	기피신청서
별지 제7호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	정보공개 위임장
별지 제9호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1호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2호	정보공개 운영실태

[별표] <개정 2021. 6. 2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21.12.23.부터 1GB마다 800원으로 수수료 변경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 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일 및 접수번호	
청구정보 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방법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	공개일	수령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 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 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 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 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 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질의 [ ]종결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 정보공개 허용	[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23.>

제3자 의견 청취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6. 23.>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법인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 중구청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 · 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 ]개최 [ ] 미개최 (사유:)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5.28>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 번호	이의 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대전광역시 중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 현황

구분	설치 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
계					
본청					
소속 기관별					

2. 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가. 총 괄

구분	처리 현황			
	계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계				
본청				
소속 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					
본청					
소속 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공개방법						수령방법					
		소계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본청													
소속 기관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라. 공개 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계	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청					
소속 기관별					

3. 처리 현황 목록

일련번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 (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공개 방법	

※ 정보공개 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 현황 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침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계									
본청									
소속 기관별									

발 행 일	2021. 9.
출 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개정판)
편 집	대전 중구 민원봉사과 기록물담당 042 -606-6403